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5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적극행정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총리<br>(인사혁신처 소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5. . .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·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·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(안 제4조, 제18조 일부 개정)
-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, 수사·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.
  - 민·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,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나.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도입(안 제11조, 제13조 일부 개정)

-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(안 제14조, 제15조 일부 개정)

-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6. 10. ~ 7. 21.) 예정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의2 중 “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”를 “지원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규제나 법령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위원회 심의자료로써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반기별로”를 “매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

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4조”를 “제14조 및 「감사원 모범 공직자 및 모범부서 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」”으로, “유공공무원”을 “유공공무원, 모범공직자”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공무원의”를 “공무원(해당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호”를 “제2호 및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(다만,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)

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 고소·고발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고, 감사 이해도가 높고 법률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필요한 사항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)<br>①·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조(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)<br>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<u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1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(생략)<br>②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 2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br>1. ~ 3. (생략)<br>3의2.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<u>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</u><br>4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11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3의2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 <u>지원에 관한 사항</u><br>4. (현행과 같음)<br>③ <u>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규제나 법령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사기</u> |

제13조(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 
요청) (생략)

## <신 설>

제14조(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1. ~ 3. (생략)

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 
요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 
과 같음)

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위원회 심의 자료로써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
등) ① -----  
매년 -----

----- . 이 경  
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 
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 
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 
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15조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①  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 
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 
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  
과,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, 인사  
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 
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  
대 조치(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  
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 
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 
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  
하는 것을 말한다) 중 하나 이  
상을 부여해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6조(징계요구 등 면책) ① ~  
③ (생략)

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 
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「감사  
원법」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 
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장려  
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정하여  
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범위  
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①  
----- 제14조 및  
「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  
서 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」--  
-- 유공공무원, 모범공직자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징계요구 등 면책) ① ~  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

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 
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  
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 
건의할 수 있다.

제18조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 
대한 지원) ① (생략)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 
(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  
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 
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 
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 공무  
원(해당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  
의 -----  
-----.

제18조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 
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제2호 및 제3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소송  
을 수행하는 경우(다만, 법원  
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  
된 경우에 한한다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 
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 고소·  
고발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 
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 
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 
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| <p>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고, 감사 이해도가 높고 법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필요한 사항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8501 |